

[5대 법령 의무교육 관련 안내 사항]

구 분	교 육 명	교 육 대 상 및 방 법	교 육 자 료	비 고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300인 미만은 자체 집합 교육 가능 - 300인 이상 전문 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진행 - 온라인 교육가능 (서울시평생학습포털)	- 한국장애인공단 사이트에서 다운가능	
2	산업안전 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대상기업 조회 - 운수업의 경우 정기교육 12시간 교육 - 자체교육 가능	- 산업안전포털 사이트에서 다운가능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 - 매년 1회 이상 교육 실시 - 자체교육 가능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4	개인정보 보호 교육	- 개인정보 취급자만 교육 - 자체교육 및 온라인교육 가능	- 개인정보배움터에서 교육가능	
5	퇴직연금교육	- DB, DC형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 연 1회 이상 교육 가능 - 자체교육 가능하나 가입된 연금종류별 맞춤 교육 실시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에서 다운가능 - 해당 거래 금융기관 교육 문의	

- 모든 교육 진행시 증빙자료 보관 (고용노동부 안내 최소 3년간 보관 권고)
- 자 체 교 육 : 교육자 성명 및 사인지, 교육일지, 교육자료, 교육사진 등 진행 자료
 - 온라인 교육 :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수료증
 - 외부기관 교육 : 인증교육기관 확인, 이수증 등 관련 자료

5대 법령 의무교육 한눈에 알아보기

5대 법령 의무교육이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교육명	의무대상	교육시간	관련법령	과테료 등	문의처	자세히 알아보기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제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www.kadn.or.kr	자세히 알아보기
2 산업안전 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1688-4544	자세히 알아보기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연 1회 이상	남녀 고용 평등과 임·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www.mw.go.kr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자세히 알아보기
4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연 1~2회(필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한국인터넷진흥원 1544-5118	자세히 알아보기
5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연 1회 이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복지공단 1661-0075	자세히 알아보기

5대 법정 의무교육을 한눈에



5대 법정 의무교육이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함

교육제도 안내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강사자격	문의처
1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직 매분기 3시간 이상	가능	✓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 ☎ www.kosha.or.kr
2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 * 상사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연 1회, 1시간 이상	가능	없음	고용노동부 ☎ (국번없이) 1350 ☎ www.moel.go.kr
3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연 1~2회(연고)	가능	없음	한국인터넷진흥원 ☎ 1544-5118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 www.privacy.go.kr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 간이교육* 가능) * 간이교육자료 게시·배포 등	연 1회, 1시간 이상	가능	✓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edu.kwid.or.kr
5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연 1회 이상	가능	✓ 퇴직연금사업자	근로복지공단 ☎ 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pension.hcmwv.or.kr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규정 안내

구분	관련 법령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작업재활법 제5조의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연금교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90호, 2025. 12. 30., 일부개정]

-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1.>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9. 26.>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③ 법 제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 2022. 1. 11.>
-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
- ⑤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 ⑥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2. 1.>
- [본조신설 2018. 5. 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6.] [고용노동부령 제455호, 2025. 12. 26., 타법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대표,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10, 8813, 8815, 8997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고용노동부(안전문화협력팀-안전보건교육) 044-202-8820, 8993, 8921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96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9. 27.]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 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 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비고

1. 위 표의 적용을 받는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면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

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4. 삭제 <2025. 5. 30.>

5. 삭제 <2025. 5. 30.>

6. 삭제 <2025. 5. 30.>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비고: 사업주가 제1호의 비고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비고: 영 제67조제1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6호, 2025. 10. 1., 타법개정]

-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2. 17.>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97호, 2025. 4. 1.,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심사총괄담당관 - 일반 법령해석), 02-2100-304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제협력담당관 - 국외이전), 02-2100-2484, 2499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 법령 제·개정, 아동·청소년), 02-2100-3057, 304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신기술개인정보과 - 영상정보, 안전조치), 02-2100-3064, 30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데이터안전정책과 - 가명정보, 개인정보안심구역), 02-2100-3088, 3074, 3058, 307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자율보호정책과 - 보호책임자, 자율규제, 보호수준 평가, 처리방침, 영향평가), 02-2100-3083, 3089, 3087, 3096, 308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분쟁조정과 - 분쟁조정, 손해배상책임), 1833-6972, 02-2100-314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정부마이데이터 추진단(전략기획팀 -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02-2100-3173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①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4. 13., 2023. 12. 12.>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 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 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 계약서에 관한 사항
 -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② 사용자(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는 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을 교육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4. 13.>

제32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통 교육 사항: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하는 교육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 나.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
 - 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2.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항: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하거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3.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본조신설 2022. 4. 13.]